

대부업권 신용정보 집중의무 관련 안내

(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부)

□ 배경

- 「신용정보법」 개정('15.9.12.시행)으로 대부업체*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**가 명확하게 마련됨에 따라,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이하 “신용정보원”)에 집중하여야 함***

* 금융감독원 직권 검사 대상(~'16.7.25.),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('16.7.25.~)

*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1조제2항제19호, 제37조의2제4항

**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1항, 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제26조

□ 신용정보 집중대상 대부업체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('16.7.25.시행)
 - 2개 이상 시·도 영업소 설치,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(대기업)에 속하는 자, 자산규모 120억 이상·대부잔액 50억 이상인 자,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*(P2P연계대부업자)
- * 「대부업법 시행령」 제2조의4 ('17.8.29.시행)

□ 집중대상 신용정보

- 금융위 등록 이후 발생한 금전대부(신용대출, 담보대출 등) 외 금융기관*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정보도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
- *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정한 자(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포함)

신용거래정보	개인대출정보(채권자변동정보 포함), 개인채무보증정보, 기업신용공여정보
신용도판단정보	연체등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

※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매각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「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」*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, 해당 가이드라인 제19조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채권양수도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야 함

* 금융감독원(<http://fss.or.kr>)→업무자료→공통→조사연구자료→분야별 감독제도→115번 게시물

□ 신용정보원 가입절차

가입절차	절차상세
가입신청서 작성	(대부업체)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가입신청서 다운로드* 후 작성 * 대부금융협회(www.cfa.or.kr) > 대부업정보 > 자료실 > 신용정보원 가입신청 관련(기타 자료 포함) > ① 신용정보원 가입 신청서 (가입절차 안내문 포함)
한국신용정보원에 신청서 제출	(대부업체) 가입신청서(법인인감 날인 필수), 동의서를 작성하여, 사업자등록증(사본),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(원본, 3개월 이내 발급분)와 함께 신용정보원으로 등기 발송
분담금 납부 요청공문 수신 후 분담금 납부	(신용정보원) 가입 신청서 검토 후 분담금* 납부 요청 공문 발송** * 가입분담금 50만원(웹방식 기준, 최초 1회만 납부) ** 신청서 발송일 기준 1주 소요 (대부업체) 분담금 납부
기관코드 발급	(신용정보원) 분담금을 납부한 대부업체에 한하여 기관코드(기관고유번호 7자리) 발급 * 분담금 납부일 기준 1주 소요
일반신용정보 관리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	(대부업체) '일반신용정보 관리포털*'에 접속하여 사용자 기관인증 등록 등 회원가입 절차** 수행 * 신용정보 집중업무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원 자체운영 웹페이지 ** 기관코드 발급 완료 기관에 가입절차 안내자료 송부 (신용정보원) 회원가입신청 승인
신용정보 집중 관련 업무 수행	(대부업체) 신용정보 집중업무 수행

○ 가입관련 문의

-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2팀 (T. 02-3705-5434)

◎ 신용정보 집중업무 관련 상세내용은 [한국대부금융협회\(www.cfa.or.kr\)](http://www.cfa.or.kr) > 대부업정보 > 자료실 > 한국신용정보원 가입신청 관련(기타 자료 포함) 게시글의 “대부업권 신용정보집중제도 설명회 자료”,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” 참고

〈참고〉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

구분	관련 조항
<p>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</p>	<p>제18조(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) ① 신용정보회사 등*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·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.</p> <p>* 신용정보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(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포함)</p> <p>제52조(과태료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</p> <p>5.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</p>
<p>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</p>	<p>제21조(신용정보의 집중관리·활용) ② 법 제25조제2항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”이란 (중략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/p> <p>19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</p>
<p>신용정보업 감독규정</p>	<p>제26조(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) 영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·활용 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·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.</p>